

● **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6-373호**

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6월 4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주차환경개선사업이 소진기금 → 지특회계로 회계가 이관('23년~)되고 '27년 사업 변경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문 정비

2. 주요내용

가. 지원조건 변경(제4조, 제20조)

- 국고보조금 보조 비율* 하향(국비 60% → 50%, 지방비 40% → 50%)

나. 우대사항 및 지원요건 정비(제5조, 제9조)

- (제5조) 사업 신청 시 우대사항(가점 부여) ①정비 및 ②추가*

* ① (정비) 지원요건이 화재공제 가입률 50% 이상으로, 우대 조건을 50 → 60%로 상향

② (추가) 건립 예정 부지를 미리 매입한 시장

- (제9조) 사업 지원요건(이해관계자 동의 비율)을 개선하여 사업 추진력 강화

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6월 24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(참조 : 전통시장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wogh2011@korea.kr

2)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

3) 팩스 : 044-204-790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(전화 : (044) 204 - 7898)에 문의하여 주시기
바라며,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. 개정이유

주차환경개선사업이 소진기금 → 지특회계로 회계가 이관('23년~)되고 '27년 사업 변경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문 정비

2. 주요내용

가. 지원조건 변경(제4조, 제20조)

- 국고보조금 보조 비율* 하향(국비 60% → 50%, 지방비 40% → 50%)

나. 우대사항 및 지원요건 정비(제5조, 제9조)

- (제5조) 사업 신청 시 우대사항(가점 부여) ①정비 및 ②추가*

* ①(정비) 지원요건이 화재공제 가입률 50% 이상으로, 우대 조건을 50 → 60%로 상향
②(추가) 건립 예정 부지를 미리 매입한 시장

- (제9조) 사업 지원요건(이해관계자 동의 비율)을 개선*하여 사업 추진력 강화

* (기존) 건립, 개보수, 이용보조 등 사업분야 무관 이해관계자 60% 이상 동의 必 →
(변경) 건립: 80% 이상 동의 必 / 개보수: 현행 60% 유지 / 이용보조: 동의 폐지

다. 현실 반영 조문 정비(제1조, 제6조, 제8조 등)

- 회계 변경, 타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문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

라. 기 타 : 1) 서식 개정안 별첨

2) 행정예고(2026. 5. 28. - 6. 26. 예정)

3) 행정규제 : 사전규제심사 실시 예정

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

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제1항 중 “제9조제6항”을 “제9조제8항”으로, “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본문 중 “60%”를 “50%”로, “40%”를 “50%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선정한”을 “선정한 인구감소지역 및”으로, “70%”를 “60%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80%”를 “70%”로 한다.

제5조제4호 중 “50%”를 “60%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건립사업 신청 시 건립 예정 부지를 미리 매입한 시장

제6조제3항 단서 중 “최종선정협의회”를 “적격성 검토 위원회”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최종선정협의회”를 “적격성 검토 위원회”로 한다.

제9조제4항 본문 중 “따른”을 “따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”로, “60% 이상의 동의”를 “동의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단, 주차장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동의는 생략할 수 있다.

제9조제4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경우: 80%

2. 공영주차장을 개보수하는 경우: 60%

3. 주차장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: 60%

제11조 중 “제출하고,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”을 “제출”로 한다.

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13조제8항을 삭제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최종선정협의회”를 “적격성 검토 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“기획재정부장관”을 각각 “기획예산처장관”으로 한다.

제19조를 삭제한다.

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한다.

제19조(중전의 제20조)제3항 중 “60%”를 “50%”로 한다.

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한다.

제28조를 삭제한다.

제29조,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제27조, 제28조 및 제29조로 한다.

제27조(중전의 제29조)제6항 중 “시·도지사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”을 “시·도지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”을 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”으로 한다.

제28조(중전의 제30조) 제4항 후단 중 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”를 “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 및 적용 범위) ① 이 지침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5조제4항 및 <u>제9조제6항</u>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(이하 “주차환경개선사업”이라 한다)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과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4조(지원조건) ①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는 국가에서 최대 <u>60%</u> 이내를, 지방자치단체가 <u>40%</u> 이상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다. 단, 제7조제4항에 따라 공공 및 사설주차</p>	<p>제1조(목적 및 적용 범위) ① ---- ----- ----- ----- <u>제9조제8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지원조건) ① ----- ----- ----- <u>50%</u> ----- ----- <u>50%</u> ----- ----- -----</p>

1. ~ 3. (생략)

4.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일정규모(전체상인의 50%) 이상인 시장

5.·6. (생략)

<신설>

제6조(지원대상 제외) ①·② (생략)

③ 전년도 지원사업의 실적행률이 50%미만인 시·군·구는 다음연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. 다만, 최종선정협의회(또는 시·도 선정위원회) 심사결과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8조(예산편성절차) ①·② (생략)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·도지사가 제출한 선정 결과에 대한 최종선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및 금액을 검토할 수 있다.

제9조(사전준비) ① ~ ③ (생략)

④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
일정 규모(전체상인의 60%) -

5.·6. (현행과 같음)

7. 건립사업 신청 시 건립 예정 부지를 미리 매입한 시장

제6조(지원대상 제외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. ---- 적격성 검토 위원회

-----.

제8조(예산편성절차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 적격성 검토 위원회-----

-----.

제9조(사전준비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에 따른 이해관계자 및 시장등 상인의 60%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. 다만, 시장등과 관련 없는 시설과 함께 시장등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의 조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⑤ ~ ⑧ (생략)

제11조(사업신청)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사업신청 시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와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보고서, 이해관계자동의서(별지 제3호 서식), 사업추진 동의서(별지 제4호 서식), 부동산 매매동의서(별지 제5호 서식), 사업비 산출 견적서, 시장 등록증, 상인회 등록증, 관리·운영계획 등을 시·도지사에게 신청 마감

----- 따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----- 동 의 ----- . 단, 주차장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동의는 생략할 수 있다.

1.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경우:

80%

2. 공영주차장을 개보수하는 경

우: 60%

3. 주차장 사용료의 일부를 지

원하는 경우: 60%

⑤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사업신청) -----

일까지 제출하고,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.

제12조(현장평가) ① ~ ③ (생략)

④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시·도지사가 요청하면 컨설팅기관 또는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.

⑤ 시·도지사는 현장평가 결과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.

제13조(선정위원회) ① ~ ⑦ (생략)

⑧ 시·도지사는 선정위원회 결과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.

제14조(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예산타당성 검토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·도지사가 제출한 지원대상 시장 등 및 사업내용에 대해 최종선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적격여부 및 예산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검토 결과가 적정으로

----- 제출-----
-----.

제12조(현장평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<삭 제>

제13조(선정위원회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제14조(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예산타당성 검토) ① -----

----- 적격성 검토 위원회-----

-----.

② -----

통보한 것에 한하여 예산편성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는 중소기업부 장관이 부적격 지원대상으로 통보한 시장 등 및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변경하여 중소기업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중소기업부 장관은 시·도지사가 제출한 최종 예산편성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5월 31일까지 제출한다.

제19조(주차환경개선사업 자문위원단 구성·운영)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주차환경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에 「주차환경개선사업 자문위원단」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인회 등 상인조직의 요청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.
1. 주차환경개선사업 설계 및 집행관련 자문

-- 기획예산처장관-----

③ -----

----- 기획예산처장관-----

④ -----

----- 기획예산처장관-----

---.
<삭 제>

2. 시공방식의 적절성 등 기술
자문

3. 공사규모 및 사업비산출(재
료비, 부지매입비, 노무비 등)
적정성

4. 기타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
애로사항 자문

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자문
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
게 통보하고, 자문내용을 반영
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제20조(사업변경) ①·② (생략)

③ 지방비를 감액하여 국비지원
비율이 60%를 초과하도록 사업
변경을 할 수 없다.

④·⑤ (생략)

제21조·제22조 (생략)

제23조 ~ 제27조 (생략)

제28조(사업관리시스템) ① 중소
벤처기업부장관은 주차환경개
선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
여 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,
공고, 사업 신청 및 평가 관리,

제19조(사업변경) ①·② (현행과
같음)

③ -----
----- 50%-----
-----.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20조·제21조 (현행 제21조 및
제22조와 같음)

제22조 ~ 제26조 (현행 제23조부
터 제27조까지와 같음)

<삭제>

시장등의 지원 정보, 사업비 이
용현황 등을 관리할 수 있다.

②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하
는 지방자치단체, 위탁관리기
관, 시장등은 사업관리시스템에
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구하
는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.

제29조(제재 처리 절차) ① ~ ⑤
(생략)

⑥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전
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제
재 내용을 제재 대상에게 통보
하여야 하며, 이의신청 후 개최
한 최종 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
중소벤처기업부장관, 시·도지사
사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
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⑦ 중소기업부장관 및 소상
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최
종 전문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
제재 대상에 대해 보조금법 제3
1조~제33조의2에 따라 환수, 사
업참여제한, 수사의뢰, 고소, 고
발 등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여
야 한다.

제30조(전문위원회) ① ~ ③ (생

제27조(제재 처리 절차) ① ~ ⑤
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
----- 시·도지사

-----.

⑦ ----- 지방
중소벤처기업청장-----

-----.

제28조(전문위원회) ① ~ ③ (현

략)

④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의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제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협약 및 계약해지·해제, 환수, 고소·고발 건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후속 처리한다.

제31조 (생략)

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-----
--.

제29조 (현행 제31조와 같음)